



재선충병 방제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훈 증

고사목을 1~2m²크기로 잘라 쌓은 후 약제를 뿌리고 방수천막(타포린) 또는 컨테이너에 밀봉해 방제합니다.



소 각

안전한 장소에서 고사된 나무(직경 2cm 이상의 잔가지까지 포함)를 모아 소각해 방제합니다.



파 쇠

고사된 소나무(직경 2cm 이상의 잔가지까지 포함)를 파쇄·장비를 활용하여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해 방제합니다.



※ 일정구역 모두베기 등 방제사업 후 조림사업 신청 가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특별법에 따른 위반행위시 벌칙내용

벌금 최고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

1.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입목 또는 원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3.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4.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단,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 이동 허용)

벌금 최고 500만원

✓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아래 방제 명령 미이행

1.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입목의 벌채
2.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입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
3.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 입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4.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물품 또는 시설 소유자에 대한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의 소독 조치

✓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경우

벌금 최고 200만원

-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처리할 경우

과태료 최고 200만원

- ✓ 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 등의 토지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제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단속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주세요!



경상남도
GYEONGNAM